

“의붓딸 성폭행 아버지 특별법 적용 처벌가능”

서울고법 판결...호적입적때 ‘존속·친족’관계 해당

자기 호적에 입적시킨 의붓딸을 육묘인 의붓아버지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상의 ‘존속 또는 친족’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붓아버지는 존속 또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붓딸을 성폭행했을 경우 성폭력범죄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의붓딸 등 인척관계도 보호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고발이 없더라도 성폭행범을 처벌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원

구 부장판사)는 16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아무개(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밝히고, 조씨에게 성폭력범죄 특별법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 특별법 제7조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이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김씨가 피해자를 호적상 출생자로 등재만 하고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양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만큼 입양의 효력이 인정돼 특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세준 기자

보안법위반 13명 구속

경찰청은 16일 손영우(25·동국대 사회 졸업)씨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결성)로 구속하고, 엄형식(22·외국어대 불어4)씨 등 9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김일영(26·서울대 공법4 휴학)씨 등 현역 군인 4명을 구속했다. 손씨 등은 94년 3월 동국대에서 전국 27개 대학 학생 1백여명과 함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등을 강령으로 한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을 결성한 뒤, 우루과이라운드 비준 반대투쟁과 노동절 기념대회를 비롯한 각종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강문 기자